

『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3월 13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3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3월 16일

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신영근

나. 제안이유

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,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「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」를 제정코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인정시장의 구역의 범위(안 제10조)
-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(안 제22조)

- 시설현대화시설물 위탁관리(안 제23조)
- 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(안 제25조)
- 임시시장의 개설(안 제36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 별표1 및 제2조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, 제16조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조례안은 「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인정시장과 시장상인회, 그리고 시장현대화사업, 시장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
-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